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II. 심사경과	1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
IV.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지	7
V. 심사결과	8
VI. 소수의견 요지	8
VII. 부대의견	8
[별첨]	9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해양수산부 소관

1) 수산발전기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3월 31일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4. 6.)

-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6.)

-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1. 해양수산부 소관

가. 개 요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5개 세출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 대비 9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사업 증액내역은 아래와 같음.

【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6년도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A
총 계		225,175	317,078	91,903	40.8
농특회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9,098	80,687	1,589	2.0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46,819	46,819	순증
에특회계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8,661	29,212	10,551	56.5
지특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668	28,612	2,944	11.5
수발기금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01,748	131,748	30,000	29.5

자료: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

- 첫째,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은 본예산(167억 6,400만원) 대비 1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동전쟁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긴급바우처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은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468억원이 편성되었음.
- 이에 대해서는, 과거 집행 사례에서 과도한 전용 또는 불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유가 변동폭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어업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한액 기준 및 지원 기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및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으로,

본예산(186억 6,100만원) 대비 약 105억원을 증액하였음.

- 이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등 최근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보조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경유 외의 연료를 이용하는 화물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넷째,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의 내역사업인 ①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1억 2,900만원 증액)과 ②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8억 1,500만원 증액)은 유류비 상승 등 전반적 운영비용 상승에 따라 증가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연내 집행을 위하여 1일 생활권 항로를 추가 모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2025년 발생한 세수 부족에 따른 사고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섯째, ‘수산물상생활인지원’ 사업은 본예산(1,000억원) 대비 3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지원(대한민국 수산대전)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편성된 추경 예산 대부분(225억원, 75%)이 하반기에 추석 등 특정시기에 집행

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중동사태로 인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추경예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제
한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IV.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081억 7,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0개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액 32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가 부담 완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에 221억원을, 어업인 면세 경유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을 위하여 7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에 415억 4,600만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인상분 지원사업에 78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항만물류 기업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항만물류 비상 대응 지원사업에 104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적선박 피해지원을 위해 국적선박 피해 긴급지원사업에 1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V. 심사결과

- 수정의결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부대의견

- 없음

[별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

Ⅰ.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500	-	500

II.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1.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현계획 (A)	증감액 (B)	변경안 (C=A+B)				
1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3044-311) (수발기금)	101,748	30,000	131,748	132,248	500	○ 전국 주요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및 먹거리 등을 소개하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신규 예산 5억원 증액 필요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사항 없음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